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4

제출연월일 : 2002년 3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도세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등의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규정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2항, 제10조 및 제15조)

나.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함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
- 나환자 ⇒ 한센환자
- 대한나관리협회 ⇒ 한국한센복지협회
- 음성나환자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보완함 (제13조제1항)
임대주택 취득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30일)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시도 감면 가능

☐ **의안전문**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부금"을 "대부대상자가 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를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한다.

제10조중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중 "정하는"을 "정한 자가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

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④(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 ----------.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0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 ---------- ---------- -------.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현 행	개 정 안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2(생략) ②(생략)	---------- ---------- ---------- ---------- ----. 1.·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2.(생략)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정한 자가 취득하는** ---- ----------. (단서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제17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제17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1. ---------- ---------- ------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3.(생략)	2.·3.(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전염병예방법 (개정 2000. 1. 12, 법률 제616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다. 한센병 (⇦ 종전 나병)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99. 2. 5 법률 제5761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 1999. 3. 3, 대통령령 제16155호)

기타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사본)